#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운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3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.

발 의 자:정운천・이철규・권명호

정진석 • 윤창현 • 최형두

홍문표 • 이양수 • 안병길

추경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.

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,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9조제3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##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: 면허취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・②	제9조(면허의 취소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	③
「해사안전법」 제42조제1호	
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	
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	
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	
한다. 다만, 해당 사유와 관련	
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	
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	
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	3.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
<u>경우</u>	경우: 면허취소
가. 1차 위반: 업무정지 6개	
월	
나. 2차 위반: 면허취소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